

## Contents

### 01 법률칼럼

- 가깝지만 먼 북한과의 거리를 생각한다 (임성택 변호사)

### 05 해외통신

- 영국 이해하기 (박용대 변호사)

### 09 열려라 중국

-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주요 내용 (상해지사 수석대표 최정식 변호사)

### 12 생생러시아

- 러시아 건설업면허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15 주목! 이 판례

- 동일한 대출한도 초과와 업무상배임

### 18 최신법령

- 개인정보보호 강화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 신설

### 20 지평소식

- 제1회 법무법인 지평 • 지성 워크샵 개최
- 중국 화리이공대학 부학장님 본사 방문
- 법무법인 지평, 북한식량지원 성금 모금 및 전달
- 최승수 변호사, 2008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세미나 참석

### 23 업무동향

- 법무법인 지평, 직장내 성희롱 소송 수행 및 승소

### 24 본사 복귀 및 귀국인사

- 이행규 변호사

### 25 영입인사

- Guyen Van Dam 베트남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가깝지만 먼 북한과의 거리를 생각한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제언**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지구에서 유일하게 핸드폰과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19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456km인데 신의주는 360km이니 신의주가 훨씬 가깝습니다. 또한 함흥이 대구보다 더 가깝다고 합니다. (269km 대 306km)<sup>1</sup> 개성공단은 서울과 인천에서 차로 불과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남산에서도 개성의 송악산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개성공단을 가려면 서울에서 새벽 6시쯤 나서야 10시쯤 돼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처음 가는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복잡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 뿐입니까. 로밍서비스만 받으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터지는 핸드폰이 북한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또 남미의 오지에서도 가능한 인터넷이 북한에서는 남한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민족내부의 거래라지만 남과 북의 통관절차 또한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깝지만 먼' 곳입니다.

**89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43만명이 북한을 방문**

지난 기간 남북간의 통행, 통관, 통신교류(이른바 3통)는 비약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2000년에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7,986명인데, 2007년에는 159,214명이니 무려 20배가 늘었습니다.

<sup>1</sup> 도시간 거리는 “지리지식 깨우쳐준 ‘도로원표’”, 대한민국 정책포털 기사(2005. 5. 21.자)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광화문에 있는 도로원표 입석에 표시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북한지역은 직선거리로, 우리 쪽은 도로를 이용한 거리로 계산한 것이기에 수평비교를 하려면 약간의 가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남북왕래인원현황 (단위 : 명)

연도	'8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3	계
남→북	11,321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100,838	158,170	69,033	496,539
북→남	637	706	191	1,052	1,023	321	1,313	870	1,044	30	7,187
계	11,958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101,708	159,214	69,063	503,726

(※금강산 등 관광인원 제외)

위 통계는 금강산 등 관광인원이 제외된 것입니다.<sup>2</sup> 금강산 관광객은 작년 연말 170만명을 넘었고, 올해는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성공업지구도 2008년 1사분기 현재 북측 근로자 25,930명과 남측 근로자 947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 지역에 단기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체류 또는 거주하는 남한 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1년 이상 체류하는 남측 주민을 위한 거주등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지구에서 출생, 사망, 결혼하는 경우 그에 관한 등록도 하도록 했습니다.

인원의 왕래와 더불어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왕래도 크게 늘었고, 남과 북의 교역 규모도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래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규모입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모로 남북 사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sup>2</sup> 통일부, 통일백서 2008

## 남북 교류의 지속성과 성격 변화

물론 아직도 남북관계는 정세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춤거리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성에 있던 남측 공무원들이 모두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것은 남북 당국 어느 쪽도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남북 사이의 민간교류를 원천봉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정세와 상관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북핵실험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겪었던 최악의 2005년에도 남북 사이의 인원왕래는 줄지 않았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또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냉전시대의 남북 교류는 절대적 금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안보적 관점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법률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하였습니다. 남북간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고, 서서히 그러나 막을 수 없는 대세처럼 활성화되었습니다. 급기야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남북 사이의 교류는 여전히 소규모로 일회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남북간 교류도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전면적이고 대규모화되었습니다. 정치적 교류나 인도적 지원보다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적 교류가 주류로 되었습니다. 한편 남한의 경제력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정치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부분적인 수정을 거듭했을 뿐 기본적 구조와 내용에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남북 교류의 당사자인 민간은 남북 사이의 통행, 통신, 통관이 불편하기 짝이 없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남북간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2007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총리회담에서 개성공단의 3통 문제에 관해 합의함에 따라, 적어도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 문제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일시 주춤하고 있으나 철도화물수송이 시작되고 통신센터나 물자하차장 등이 건설되면, 통행, 통신, 통관을 위한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3통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법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행, 통신, 통관을 위한 물적 인프라 못지않게 법적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 새로운 교류협력 시대에 맞는 법적 인프라 구축 필요

남측 법제의 개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간 통행, 통신, 통관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등을 통해 발전해온 남북관계의

현실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변할 남북관계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옷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낡은 옷을 일부 수선하거나 빨아서 입을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옷으로 바꾸는 것이 그 동안 크게 성장해왔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남북관계에 부응하는 것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즉 사회문화 교류행사나 소규모 교역 위주의 남북교류협력에서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와 같은 전면적이고 대규모 협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에서는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계도 그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뿐만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 안변, 남포의 조선단지 등 경제특구가 새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제특구 방식의 남북 경제협력은 남북 당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므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제특구는 북한의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제의 측면에서도 특수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편하여 북한 경제특구에 관한 특별법으로 확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특구의 3통 문제 또한 속도나 방식의 측면에서 북측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측 전체와의 3통은 속도나 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절하더라도, 경제특구에서는 좀 더 과감한 3통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측 법제의 정비 뿐 아니라 남북 사이의 합의서가 새롭게 채택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3통 문제는 어느 일방이 제도를 갖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쌍방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제21차 회의(2008년 5월 26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해외통신)

## 영국 이해하기



법무법인 지평 박용대 변호사

### 영국 개요

세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인 만큼 우리에게 영국이라는 나라는 낯설지 않지만, 그 익숙함 때문에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이해를 소홀히 하게 되는 나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영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흔히 줄여서 'United Kingdom'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방국가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영국의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웨일즈(수도는 카디프)는 1284년에 런들랜법(Statute of Rhuddlan)에 따라 잉글랜드의 왕의 지배를 받다가 1535년 연합법(Act of Union)에 따라 정치적으로 잉글랜드에 완전 통합되었습니다.

영국의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수도는 에딘버러)는 1603년 스코틀랜드 왕 James Stuart(James VI)가 잉글랜드 왕(James I)에 취임함으로써 영국 왕실에 통합되었다가, 1707년 Act of Union에 의해 완전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일랜드 해를 사이에 두고 잉글랜드 서쪽에는 아일랜드 섬이 위치해 있는데 북아일랜드(수도는 벨파스트)는 그 섬의 북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1800년 Act of Union에 의해 아일랜드 왕국은 잉글랜드에 병합되었는데, 1922년 아일랜드 공화국 독립운동에 의해 아일랜드 남부지역이 영연방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북아일랜드만 현재 영국의 연방국가의 일원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면적은 24.5만km<sup>2</sup>(한반도 면적은 22.1만km<sup>2</sup>)이고, 인구는 2007년 현재 약 6,100만명(남한 인구는 2007년 현재 4,800만명)입니다. 2006년 현재 영국의 GDP는 1조 9,970억 달러(대한민국은 2006년 현재 1조 1,127억 달러)의 규모이고, 1인당 GDP는 32,990달러(대한민국은 2006년 현재 23,038달러)입니다.

**영국의 의회**

영국은 잘 알고 있듯이 근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입니다.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하면서 민주주의의 대표적 정치체제의 하나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양당 체제를 이루었으나, 1차 대전 이후 자유당이 몰락하고 노동당이 등장하여 보수당과 노동당의 새 양당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개혁적 자유주의(중도 좌파) 성향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제3당으로서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의회는 상원(The House of Lords)과 하원(The House of Commons)의 양원제인데,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The House of Commons 의원의 선출은 First-past-the-post 방식으로, 각 선거구에서 후보 1명만으로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을 확보한 당이 집권당이 되며, 그 정당이 내각(Cabinet)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야당 또한 미리 예비 내각(Shadow Cabinet)을 구성해 놓는데, 이는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다수당이 되는 경우 누가 장관이 되고,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영국 집권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에 집권한 노동당의 경제정책 실패와 1979년 3월에 실시한 스코틀랜드

드 및 웨일스지방 자치 허용에 관한 국민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으로 인해 1979년에는 대처 당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대처 정권은 1983년 포크랜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게 되고 그 해 실시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대처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성과에 대하여 국민들 다수의 지지가 이어져 보수당은 1983년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처의 보수당 정권은 소위 "대처리즘"이라 일컬어지는 경제, 교육, 의료 등 제 분야에 대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대처 총리의 주민세(Poll Tax)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의 증가, 강경한 반 EC 정책이 유발한 당내 갈등 심화 등으로 결국 대처 총리는 1990년 11월 사임을 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당시 재무장관이던 메이저가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 총리는 대 EC정책, 주민세, 사회보장 문제 등에 있어 대처 총리보다 유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당내 불화를 극복하고 1991년 Maastricht 조약체결 회의와 1992년 1월의 안보리 의장국 수임 중 대소 지원문제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등 국제적인 이미지 제고에 성공함으로써 1992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이로써 보수당은 역사적인 4기 연속 집권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당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 대처 총리 시대에 이루어진 개혁에 대한 후유증, 유럽통합 문제를 둘러싼 보수당의 내분 등으로 인해 1997년 총선에서는 브레어

당수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데, 이로서 18년 동안의 보수당 집권은 막을 내리고 노동당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어 총리 재임기간 중 달성한 정치 행정 개혁과 안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2001년 실시된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압승을 거두게(노동당은 역사상 최초로 2기 연속 집권) 되었습니다. 2005년 치러진 총선에서도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여 노동당은 1997년부터 3회 연속 집권에 성공을 하고, 블레어 총리는 노동당 출신으로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연임 후 각료들의 잇단 실책과 각종 스캔들, 대 이라크 전쟁 등 중동 정책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으로 블레어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조기 퇴진 압력이 거세어 지면서 블레어 총리는 결국 2007년 6월 퇴임을 하게 되고, 고든 브라운이 후임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면서 지금까지 영국 총리로서 영국 정부를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법제도**

영국의 사법제도 중 특이한 것은 영국의 변호사 제도인데, 영국의 변호사는 Barrister와 Solicito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Barrister라고 하고, 그 외 일반 변호사를 Solicitor라고 하는데 Barrister의 권위와 명예는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의뢰인은 Solicitor에게 모든 소송 내용을 맡겨야 하고, Solicitor가 Barrister에게 사건을 다시 의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

다는 점인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과 Barrister의 접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직접 변론을 담당하는 Barrister의 객관적인 재판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 영국은 1883년 한영 우호통상항해 조약을 조인한 후 1884년 4월 서울에 영국 총영사관이 설치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49년 1월 18일 영국과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1,000만 달러에 머물던 한국과 영국의 교역량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2007년 현재 한국과 영국의 교역액은 105억달러로 한국의 대영국 수출액은 69억달러(수출규모는 유럽지역에서 독일 다음으로 큼니다), 수입액은 36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의 영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 선박해양구조물, 자동차,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등이며,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농약, 의약품, 기호식품, 강반제품, 계측제어 분석기, 원동기, 펌프 등입니다. 영국의 한국에 대한 1962년부터 2007년까지의 투자 누계액은 68억달러로, EU 국가 중 네덜란드(158억 달러), 독일(77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기업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금융), 존스매티(자동차부품), 인터서브(건축설비), 푸르덴셜(보험), RFI글로벌(전자), Tesco(유통) 등입니다. 한국기업의 대영국 투자액은 1968년부터 2007년까지 누계 22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는데, 국내기업의 경우 대유럽 투자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속하는 추세이며 이는 동구 유럽국가의 EU가입

으로 국내 주요기업의 유럽 내 생산기지가 동구권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미있는 영국의 좌측통행**

영국에 오면 가장 낯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차량의 좌측통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길을 건널 때 왼쪽만 보서는 큰일이 납니다. 이를 반영하듯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국 거리 특히 횡단보도 바닥에는 "LOOK RIGHT"가 매우 많이 적혀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도 다른 나라와 달리 자동차 오른편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게 된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세의 기사들이馬上에서 결투를 할 때(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결투) 오른손으로 창을 잡았기 때문에 무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자 상대방이 자신의 오른쪽으로 지나칠 수 있도록 왼편으로 달려야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일 당시 마부가 채찍을 오른손으로 잡고 휘두르기 때문에 휘두르는 채찍에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부를 오른쪽에 앉도록 했는데, 그것이 오른편 핸들과 차량 좌측통행으로 굳어졌다는 설입니다.

일본도 차량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19세기 메이지 시대에 서구문물을 받아들일 당시 자동차를 영국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이때 영국식 통행관습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 영국 식민지였

거나 영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은 영국처럼 차량이 왼쪽으로 통행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나 호주, 파키스탄, 홍콩, 뉴질랜드,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왼쪽 운전석에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나폴레옹의 전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나폴레옹 시대까지 전통적인 전법은 상대를 우측에 두고 좌측에서 공격하는 것이었다는데, 나폴레옹은 전쟁 당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구 전법 대신 기습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해서 큰 전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이러한 전술은 보수적인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 영향을 끼쳐 마차들까지 우측으로 통행하게 되었고, 그 후 출현하게 된 자동차도 우측으로 통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시대에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녔지만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통행 규칙을 미국식으로 바꿔 우측으로 통행하도록 하면서 오늘날의 체제로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2]

(열려라 중국)

##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주요 내용



법무법인 지평 상해지사 수석대표 최정식 변호사

지난 5월 1일부터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과 함께 중국의 신 노동관계법의 골간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법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동쟁의처리절차를 악용하여 노동쟁의의 해결을 지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침해해온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적용 범위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의 적용범위는 (i)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한 쟁의, (ii)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제 및 종료로 인한 쟁의, (iii) 제명, 해고, 사직, 이직으로 인한 쟁의, (iv)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쟁의, (v)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 혹은 배상금으로 인한 쟁의, (vi) 기타 법률에 규정한 노동쟁의 등입니다.

기존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와 비교하면, '노동관계의 확인으로 인한 쟁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노동관계의 존재, 노동관계가 언제부터 개시되었는지, 누구와 노동관계가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쟁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확대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입증책임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입증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중국 민사소송법의 일반적 원칙은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증거는 사용자측에 있어 노동자가 사용자측으로부터 증거를 제공받지 않으면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노동쟁의조정중재법은 이러한 경우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지급 회계자료, 출퇴근기록, 회사 취업규칙 등 쟁의 사항과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만 아니라 통상적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관련 증거를 유실했을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지급명령 신청**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자는 조정협의를 관할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협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의도적으로 이행 지체하여 노동자의 경제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노동자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쟁의 중재시효의 연장**

노동쟁의 중재신청의 시효기간은 1년이며, 중재시효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노동관계가 존속 중에 노동보수의 지급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쟁의의 경우, 중재시효는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종래 <노동법>은 중재시효가 60일로 규정되었는데, 짧은 중재시효로 인해 노동자가 사용자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재시효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중재시효기간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수 노동쟁의의 가집행 인정**

중재정은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 청구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을 재결한 후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을 재결하려면 (i) 당사자들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ii) 가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생활에 심히 곤란한 영향을 야기하여 합니다. 중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집행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위 특수 노동쟁의의 경우 담보제공 없이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보호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수 중재재결의 경우 중국 판정**

중재재결이 (i) 노동보수, 산재요양비,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에 관한 중재판정금액이 소재지 최저임금의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 노동표준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무시간, 휴식시간 및 사회보험과 관련된 경우에는 중국적 재결로서 중재재결서가 작성될 날로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중재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재기하여 분쟁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재신청비용 및 중재재결기간**

노동쟁의와 관련한 중재신청 시 신청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재재결기간의 경우, 중재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재결하여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주임의 승인 아래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재 재결 기한 내에 중재정이 재결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관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 비용이 무료이거나 중재재결기간이 짧은 것은 중재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생 러시아)

## 러시아 건설업면허의 개요 및 최근 개정내용



법무법인 지평 채희석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1. 개요

최근 유가급등 및 외국인투자 증가로 인한 경기활황으로 러시아에서의 건설경기 역시 급격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8년 1분기 모스크바 사무실의 연간 임대료는 A급의 경우 1180\$/m<sup>2</sup>, B급의 경우 835\$/m<sup>2</sup>, C급의 경우 520-560\$/m<sup>2</sup>에 이르고, 사무실 공급량 역시 2007년 대비 75%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건설경기의 활황에 발맞추어 국내 건설업체도 러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일부 시공사의 경우 이미 러시아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한 건설 실적을 거두고 있는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건설활동을 하기 위해 어떠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러시아에서는 건설업면허 제도에 대한 대대적

인 개정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정작업에 포함된 내용은 장래 러시아에서 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는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이미 건설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개정내용에 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기존의 건설업면허 제도

러시아 외국인투자법(Federal Law No. 160-FZ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dated on July 9, 1999)은 러시아 법률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외국기업도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도 외국법인은 러시아 법인과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됩니다.

한편 건설업과 관련하여 「특수한 유형의 영업 면허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No. 128-FZ "On Licensing Specific Types of Activity" dated on August 8, 2001)은 건설

행위와 관련하여 (i) Engineering Survey(설계나 건축에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는 작업으로서 건축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임), (ii) 설계, (iii) 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건설업체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 건설업체가 러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설립지에서 취득한 건설업면허 이외에 러시아 법률에 따라 별도의 건설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동 조항은 한시적인 규정(이른바 '일몰조항')으로서 2008년 7월 1일부로 폐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중인 바, 이에 따라 동 조항의 폐지시점이 2008년 7월 1일에서 2009년 1월 1일로 연기될 예정입니다.

건설 면허는 러시아 연방 건설국(Rosstroy of Russian Federation) 산하기관인 연방 면허센터(Federal License Center)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행정부 연방기관 체제 및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No. 752 dated on May 12, 2008)에 따라 Rosstroy는 폐지될 예정이고, Rosstroy의 업무가 러시아 연방 지역개발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업면허 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역개발부는 건설업면허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게 됩니다.

건설면허는 5년의 기간으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면허신청서, 설립기초서류의 공증본, 사업자등록증, 면허요건에 부합하는 직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면허수수료 완납증명서 등을 포함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면허신청서에 대한 연방 면허센터의 심사는 60일을 한도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러시아 세법에 따라 면허신청의 심리에 필요한 수수료는 300루블이고, 면허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000루블입니다.

### 3. 건설업면허 제도의 변경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설업면허 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안」(법률안 No. 348631-3)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 계류 중입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동 법률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동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the Town-Planning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190-FZ dated December 29, 2004)도 함께 개정됨

(ii) 정부에서 건설업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에서 건설업협회 등의 자율협의체가 자율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iii)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건설업에 관한 자율협의체에 가입하여야 함

(iv) 자율협의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자본금, 직원수, 회비납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v) 건설업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시공의무책임보험제'가 도입됨. 이를 위하여 자율협의체에 가입하

는 건설업체는 공동책임준비금으로 일정한 비용(현재 15만~30만루블로 예정되어 있음)을 납부해야 함.

(vi) 현재 운용중인 건설업면허 발급업무는 2009년 1월 1일부로 중단됨. 아울러 기존에 발급된 건설업면허 역시 동 면허의 기간에도 불문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함

현재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자율협의체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단체로 건설인연맹(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строителей)과 건설인협회(Ассоциация строителей Росси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단체를 조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러시아 건설업면허에 관한 제도의 개정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므로, 앞으로 제도 개정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목 이 판례!)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업무상배임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6월 19일 선고 2006도 4876 전원합의체 판결
-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 1.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규제

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규제는 2005년 8월 4일자 새마을금고법(이하 '법') 개정 당시 새로 도입되었고, 지금까지 처음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은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 제85조 제2항 제4호는 '금고나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역시 위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의 입법취지

새마을금고법 등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그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새마을금고의 재정 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새마을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대상판결).

### 3.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기존 입장

#### (1)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무위배행위의 존재와 별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년 4월 15일 선고 2004도 7053 판결 등).

(2) 대법원의 기존 입장(대상 판결의 별개의견)

대상 판결의 별개의견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해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별개의견은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하는 등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 자체를 '재산적 가치'로 보는 전제 하에서,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게는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편의 내지 금융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새마을금고에게는 다른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하는 등의 사업목적에 사용할 자금을 그 한도초과대출금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그 자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새마을금고는 그 만큼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이 때 그 한도초과대출금의 회수가능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다만 손

해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 점에서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4. 대상 판결(다수의견)의 내용과 의의

(1) 대상판결의 내용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거나 다른 회원들에 대한 대출을 곤란하게 하여 새마을금고의 적정한 자산운용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등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판결에서 다수의견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대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중략)...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채권의 회수 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요구함으

로써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의 행위와 업무상배임행위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데 그 첫번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6월 19일 선고 2006도 4876 전원합의체 판결 **

또한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대출해 준 경우 상호신용금고(또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상호신용금고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중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상법 제399조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거나(대법원 2002년 6월 14일 선고 2002다 11441 판결),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재직 당시 동일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초과한 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회수 금액 중 동일인 대출한도 내의 대출로 인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출 당시 차주의 신용 또는 재산상태로 보아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거나 그 대출과 관련하여 신용협동조합의 다른 대출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6년 3월 24일 선고 2005다 46790 판결), 결국 대법판결의 입장은 '임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최신 법령)

## 1. 개인정보보호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이 감소되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민원이 해소되는 등 사회적 편익과 정보주체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이용·유출, 보호조치 미이행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그 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간 고객유치의 경쟁으로 개인정보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수단은 과태료나 벌칙 중심이어서 그 제재 및 예방 효과가 불충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사고가 감소되고, 정보주체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884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정 이후 지정 제외 자산기준 등을 1조4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율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수가 경제규모에 맞추어 적절하게 조정되어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3.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방법 신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873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8960호, 2008. 3. 21. 공포, 2008. 7. 1. 시행)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상시 사용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 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평소식)

## 제1회 법무법인 지평·지성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지성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 전문가들은 지난 7월 4일, '2008 제1회 지평·지성 워크숍' 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새로운 통합로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이 되자'는 내용의 기초발제가 있었고, 이후 '좋은 로펌, 훌륭한 변호사'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22일 법무법인 지평과 법무법인 지성 합병 선언 후 처음 개최된 합동 워크숍이었으며, 두 로펌 변호사들이 통합로펌의 비전을 나누고 상호우의와 결속을 다지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평소식)

## 중국 화리이공대학 우양요 부학장님 본사 방문

지난 6 월 21 일, 중국 상해의 화동이공대학 우양요 부학장님과 화리법률사무소의 유원 대표변호사님이 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화동이공대학은 상해에 있는 우수한 종합대학으로 법과대학 내에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화동이공대학에는 법무법인 지평 임호 중국변호사가 현재 재직중이며(중국은 교수, 변호사 겸임 가능), 지평 상해지사는 지난 5 월 15 일 이 대학 학생에게 제 1 회 지평화리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화리법률사무소는 화동이공대학 부설법률사무소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명성이 높으며 현재 지평과 업무제휴하고 있습니다.

이날 두 분은 성신여대에서 주최한 “동아시아 사법제도와 민간의 역할” 세미나 참석차 서울에 오셨다가 지평의 초대로 본사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화리법률사무소 유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임호 중국변호사, 조용환 대표변호사, 화동이공대학 우양요 부학장, 명한석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지평소식)

## 법무법인 지평, 북한식량지원 성금 모금 및 전달

법무법인 지평은 6월 25일, 현재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해 사내에서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한국JTS에 전달하였습니다. 

※ JTS (<http://www.jts.or.kr>)

JTS(Join Together Society)는 국제기아·질병·문맹퇴치기구로서 전 세계,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기아·질병·문맹퇴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최승수 변호사, 2008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세미나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최승수 변호사는 6월 30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2008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정기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UCC 제공 사이트의 저작권법적 책임'에 대해 발제 하였습니다. 

### [세미나 소개]

- 제목 : 2008년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 주제 : '저작권 간접침해' 및 'UCC 제공 사이트의 저작권법적 책임'
- 일자 : 2008년 6월 30일
- 장소 : 경희대학교 법학관 국제회의실
- 주최 : (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업무동향)

## 법무법인 지평, 직장내 성희롱 소송 수행 및 승소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한 A(4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인인 회사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7월 10일 선고되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위 판결은, 그 동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에 의해 형성되어 판단기준이 불분명했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위반의 범위가 크고 중하며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엄격히 다스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직장내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대법 "성희롱' 대기업 지점장 해고는 정당"
- 한겨레 - 직장 성희롱 정상참작? 더는 안통한다
- 국민일보 - 大法, 직장내 반복된 성희롱 해고 사유로 충분

### [담당변호사]



(사진 : 임성택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 (본사 복귀 및 귀국인사)

## 이행규 변호사 본사 복귀 및 귀국인사



(사진 : 법무법인 지평 이행규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가 2 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6 월 16 일 본사 복귀하였습니다.

이행규 변호사는 연수기간 중 Columbia Law School 에서 석사 과정(LL.M.)을 마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에서 노르웨이 최대 금융그룹인 DnB NOR Group 의 미국 은행업 인가변경, CALYON 의 한국내 DES 발행, 한국 금융기관의 미국 부동산 투자, 미국 투자자의 한국 상장기업 및 부동산 개발 투자 등 국제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행규 변호사는 앞으로 다양한 해외사업과 증권 및 금융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학력사항

- 진주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미국 Columbia Law School 석사 (LL.M.)

### □경력사항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 육군 법무관
-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군사법제도 개혁 부문) 역임
- 로앤비 건설법무특강 강사 역임
-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7년)
-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 현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 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영입인사)



## Nguyen Van Dam 베트남변호사

### □학력사항

- Law University of Ho Chi Minh City 졸업

### □경력사항

- 전 21st Centur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pany, Legal Executive
- 전 A.C.M Trade, Legal Executive
- 베트남 변호사 자격취득 (Bar Association of Ba Ria-Vung Tau Province, 2005 년)
- 전 Mai Thanh Long Law Office 변호사
- 현 VINA HORIZON LAW GROUP 베트남 변호사

### □인사말

I joined VINA HORIZON LAW GROUP in June 2008. I am happy and proud of having an opportunity to work with VINA HORIZON LAW GROUP.

I studied at the Law University of Ho Chi Minh City from 1998 to 2003. After graduating the law school, I started to work for 21st Centur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 Ltd and A.C.M Co., Ltd thereafter as a legal executive for two and a half years. On December 2005, I was admitted to the Bar Association of Ba Ria-Vung Tau Province and worked for Mai Thanh Long Law Office located in Ba Ria-Vung Tau Province as a lawyer till I joined VINA HORIZON LAW GROUP.

I warmly welcome all foreign investors, especially Korean investors. As a Vietnamese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investments and corporate governance, I always wish to be your most faithful and close legal adviser and I trust that you will receive the best legal services from the sophisticated legal team of VINA HORIZON LAW GROUP.

Hopefully, I will have many chances to serve you shortly with utmost care for your business interest. 

# 법무법인 지평

## HORIZON LAW GROUP

<http://www.horizonlaw.com>

### 서울 본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 상해 지사

Room 3305,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Tel : 86-21-5208-2800 Fax : 86-21-5208-2807

### 호치민시티 지사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910-7510 Fax : 84-8-910-7511